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여성그룹 입장문서

2018.06.11.(월)

1. 총평

가. 용어 사용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SDGs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한국정부의 경우 SDG 5번 목표인 Gender equality를 '양성평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는 성을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두 범주로만 제한하여, 젠더는 곧 양성, 남녀라는 고정관념을 유발함. 또한 성소수자 등 두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용어로서의 '양성평등' 사용은 지양해야 함.

나. 목표 설정

- 1) 우리나라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I.3)에서 "성평등 목표 국내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법·정책에 주류화(통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이라고 하여 이를 양립불가능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양립가능함. 따라서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채택하고, 다양한 법률, 제도, 정책 및 부처에 범분야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체계 정비로서 성평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2) 폭력관련하여 "법조계, 문화예술계, 정치계, 교육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토대로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사건의 신고, 처벌, 피해자 보호, 예방에 이르는 촘촘한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바, 현재 미투운동을 계기로 노동과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적인 접근과 예방 차원에서의 접근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임.
- 3) 또한, 목표 설정(I.4)에서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overty)로 대표되는 SDGs에 녹아든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젠더규범을 함축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임. "북경여성대회 20년, 젠더와 개발(Beijing+20, Gender and Development)"을 다루었던 2015년 59차 유엔세계여성지위위원회의 논의와 SDGs 2030 선언문 서문을 참조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성평등 실현, 여성(과 여아)의 권리강화 및 임파워먼트, 더 큰 자유 속에서의 평화 증진"으로 그 목표를 제안함.

다.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의 포괄성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의 포괄성 검토(II.2)에서 목표와 세부목표가 성평등 달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으나, 사회의 구조적인 성차별 인식, 성별 역할 분담에 기한 젠더규범과 문화 등에 관해서는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의 근절”이라는 세부목표로 전부 포괄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이 항목의 세부목표에서 소위 “여성혐오”로 대표되는 다양한 차별적인 젠더규범과 문화에 대한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국가 차원의 SDGs 한계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ing no one behind) SDGs의 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5번 성평등 관련 독자 목표의 이행과 함께, 다른 16개 SDGs 목표에서도 젠더를 통합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된 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그러나 이러한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평등 실현을 전 영역의 크로스커팅 의제로서 반영하는 국가 차원의 시도는 현재까지도 매우 부족한 실정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국제 기준의 SDGs 목표의 정의 및 지표를 반영하는 국내 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어려운 점, 2) 지표 관련 국내 통계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자료이고, 지역별로 분리·생산된 통계가 매우 부족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3) 비혼·이주·난민·LBTI·장애·북한 이탈·성소수자 여성 등 한국 사회 내 취약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통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 내 교차적 형태의 차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고, 젠더 폭력 예방 및 지원, 노동, 재생산권 등 정부의 ‘여성’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함.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으로 정의된 글로벌 규범인 SDGs 목표를 국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이행수단을 분석·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함. 즉, 한국의 성평등 관련 현행 법·제도 이행의 실효성 및 중앙·지방 정부의 법·제도·정책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이행의 효과성 분석,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성평등 관련 인식과 사회 규범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 마련 및 이러한 분석 자료를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 담당 공무원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관심 및 성인지 관점, 젠더 관점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보

장하는 거버넌스 수립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행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¹⁾.

성평등 목표 및 다른 목표의 지표 설계 과정에서도 크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성평등을 고려하고 체계적인 성별분리 통계 마련을 포함하여, 다양한 여성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 설계를 주요 과제로 두어야 함. 또한 여성 노인 상대적 빈곤율, 재난 사고 발생에 대한 성별분리통계 등 다양한 사회 취약 계층의 성별분리 통계를 국가·지역적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젠더 전환적(transformative) 접근법에 따른 정책 마련의 자료로 사용해야 함.

2. 세부목표 및 지표

가. SDG 5번 목표 : 성 평등

1)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연령, 결혼 여부 등 젠더를 근거로, 혹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여부 및 이행상황을 측정하는 세부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성평등 관련 법/제도의 정책 대상 및 범위에 배제되는 여성들의 존재 여부 또한 꼼꼼히 검토되어야 함(비혼 여성, 성소수자, 이주 여성 등). 또한 <목표 5.1.1>의 '성평등 및 차별금지 증진, 강제, 모니터링을 위한 법률 기반의 여부'에 관하여, 헌법·법령·조례 등 전 국가적 법 규범을 통틀어 SDGs, CEDAW 등 성평등과 관련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성평등 실현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필수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임. 특히, 지난 3월 CEDAW에서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괄해야 할 것임. 이는 아래 5.2 세부목표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임.

2) 5.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여성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여성 폭력 통계가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 및 사법 처리 실태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여 왔음. 이번 K-SDGs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는,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라 분류하여 집계한 종합적인 범죄 통계를 마련하고, 여성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사법처리 현황/결과 통계 생산이 별도의 지표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1) 2018.12.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 우리의 현재 : 성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프란체스코 회관, 토론회 내용 및 조안창혜 (2017) 중 79-81쪽에서 참고하였음.

또한 5.2의 지표 중 하나는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비율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 '부부폭력', '상호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 우리사회의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실태가 성별권력관계의 문제임을 간과, ▲성별권력관계의 문제임을 간과한 '상호폭력' 용어 사용을 통해 남편폭력에 대한 적극적 방어형태에서 나오는 아내들의 행동도 같은 폭력범주의 선상에서 바라보게 하는 측면 존재, ▲폭력의 경중을 범주화하여 복잡한 폭력양상을 단순화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느끼는 폭력의 두려움과 심각성 훼손 등의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아옴. 해당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폭력에 대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음. 이미 있는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에서의 폭력을 측정하는 지표를 신설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는 것이 유의미함.

또한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특히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 폭력, 여성 혐오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의 실태 및 이러한 제반 범죄에 대한 시민, 경찰 공무원, 사법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여, 여성 폭력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5.2 지표가 모두 성인 여성과 15세 이상의 소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초·중등생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영유아 여아 대상의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때문에 여성의 연령을 구분하여 모든 형태에 대한 폭력철폐에 대한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는 5.b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 및 이용증진으로 온라인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아들에 대한 성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설정과도 연관되어 있음.

3)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위 지표가 한국에서 유효성은 낮은 것이라고 한 작업반 초안 보고서 의견에는 동의함.

따라서, 5.3.세부목표와 관련, 국내 맥락에서의 성차별적 유해한 관습은 제사문화, 차별상속, 신체 이미지 왜곡 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위 "여성혐오", 남녀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젠더규범, 언어습관 등의 규범과 문화를 변혁시키

기 위한 세부지표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민법 제781조 제1항과 관련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 관련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합의 존재, 민법 제781조 제6항과 관련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허가 등에 대한 통계도 필요할 것임.

4)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5.4.1과 5.4.2로만으로는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에 따른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려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기준 52.6%, 여성 고용률 50.7%(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임.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5.4.2 육아휴직 사용 성비와 동시에 가족돌봄휴직 사용 비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근거한 제도)을 추가할 수 있음.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은 자녀 양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또한 여성의 4대 공적보험 가입률도 성별/연령별 큰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 비율을 통해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함.

5) 5.5. 정치/경제/공공 영역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기존 지표인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및 '공공기관 관리자 비율'에 덧붙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각 급별 사법부, 경찰 공무원, 외교 공무원 등의 성별분리통계를 추가적으로 지표화 할 것을 제안함.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및 유엔 안보리 1325의 국가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평화 정책 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자 및 사절단의 성별분리통계를 제시하여, 주로 남성들로 대표되어 왔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해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관리자 비율 뿐 아니라 이사회 등 사기업에서의 의사결정 구조에의 참여비율 등에 대한 지표가 필요함.

또한 여성할당제 등의 경우, 현재까지의 이행 상황 및 불이행 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등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함.

6) 5.6 포괄적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접근 보장

<지표 초안>

- 5.6.1 학교 성교육 수행실적 및 만족도
- 5.6.3 성적 자기결정권
- 5.6.4 피임 실천
- 5.6.5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 5.6.6 성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5.6.1 관련해서도 현재 성교육 표준안이 왜곡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성교육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평가지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또한 교육의 만족도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의 만족도 조항으로 이뤄져야 함.

5.6.3 성적 자기결정권의 경우 '여성의 역량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며, 지표 5.6.4 피임사용률을 포함하여 임신중단(낙태) 실태 조사 결과 등의 지표가 들어가야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함.

5.6.5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지표의 경우 지표 분석의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움.

7)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b관련 진단에 기반하여 추진방향으로 교육에서의 성별격차와 양질의 일자리 목표와 연계하는 것에는 찬성함. 그러나 그 진단과 추진방향에서 위 2)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온라인 기반의 젠더폭력과 성착취가 만연한 현실 속에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교육으로 온라인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아들에 대한 성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표 설정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5.b.1 휴대폰 보유율 - 성별 및 연령 / 휴대폰 보유율의 경우 성별 격차에 따른 보유율 차이가 유의미한 통계일지 의문스러움. 성별에 따른 보유율 비교보다 세대에 따른 보유율 비교가 유의미할 것임.

8) 지표 제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5-1	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 할 수	○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있는 법률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CEDAW 등 국제기준에 맞는 법/제도/조례 등의 존재 여부 ○ 위의 법/제도 이행상황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부부폭력비율 ○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측정 지표(전체, 성별, 연령별)* ○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실태 (피해자 전체, 성별, 연령별)* ○ 다양한 여성폭력에 대한 시민, 경찰공무원, 사법 공무원의 인식 <p>* 폭력비율 측정지표의 경우 대상자는 기존 15세 이상 소녀와 같이 연령 제한 철폐하여 측정 필요</p>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 (harmful practices)의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 (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 15-49세 소녀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신고 전 자녀의 성과 본 관련 합의비율 ○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녀의 비율 ○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한 비율 (부(父)→모(母) / 모(母)→부(父))
5-4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 육아휴직사용 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사용 비율(전체, 연령별, 성별) ○ 가족돌봄휴직사용 비율(전체, 연령별, 성별) ○ 4대 공적보험 가입률 (전체, 연령별, 성별)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 ○ 공공부문 여성 관리직 비율 ○ 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각 급별 사법부, 경찰 공무원, 외교 공무원 등에서의 여성 비율 (전체, 연령별) ○ 국가 주요 정책 의사결정자 및 국제행사(정상회담 사절단 등)에서의 여성 비율 (전체, 연령별, 직급별) ○ 사기업 내 주요 의사결정자(이사회 등)에서의 여성비율 (전체, 연령별, 직급별)
5-6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 보장* *해당 목표는 작업반 문서에 5-5 하위 목표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성교육 만족도 ○ 성적 자기결정권 ○ 피임 실천 ○ 미혼자의 성관계 경험 ○ 성건강 관련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구축 선행 필요하며, 구축되었을 시 단순 만족/불만족 지표가 아닌 질적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명시되었으나, SDGs 5-6 세부목표에 해당되므로 따로 분류하였음.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피임실천율, 임신중단(낙태) 실태조사 결과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건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인권에 기반한 평생교육과 초중등 교육분야에서의 젠더교육과 성교육 도입 및 모니터링 ○ 여성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및 이행 지표 생성

나. SDG 1번 목표 : 빈곤감소 및 경제적 안정성 확보

1) 1.1, 1.2, 1.3

세부목표 지표의 경우, 성별 분리통계가 필요함. 빈곤 감소에 대한 세부목표인데, 예를 들어 노인 빈곤율 중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 노인보다 높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적직역연금) 가입비율도 성별 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 참고 : 전체 노인인구 대비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2012.12)

	남녀 구성비(%)		
	계	남성	여성
전체노인인구	100	41.2	58.8
국민연금수급자	100	61.1	38.9
공적직역연금수급자	100	70.0	30.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00	35.2	64.8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100	70.0	30.0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	100	40.6	59.4
	전체 노인인구 대비 수급률(%)		
	계	남성	여성
국민연금수급자	30.7	45.5	20.3
공적직역연금수급자	7.8	13.2	4.0
기초노령연금수급자	65.8	56.2	72.5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동시수급자	17.1	29.1	8.7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수급자	87.1	85.8	88.0

*출처 : 장미혜 외, 2013,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7쪽

2) 지표 제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1-1	2030년까지,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노인의 빈곤인구 비율을 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 상대빈곤율 (전체, 연령집단별)	○ 상대빈곤율(전체, 연령, 성별 집단별)
1-2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달성한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공적연금 가입비율 (전체, 연령, 성별 집단별)
1-3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기초 공공서비스 및 각종 사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및 우선적인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	○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의 비중(공공사회복지 분야별, 수급집단 연령, 성별)

다. SDG 4번 목표 : 교육

1) 4.4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기회를 제공

4.4.1 직업교육훈련 참여자수 지표에서, 이주여성, 탈북여성, 장애여성 등 경제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므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분리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2)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함

4.6.1 언어역량과 수리역량 숙련도, 4.6.2 청소년/성인 문해율의 경우, 한국의 문해 및 산술능력 달성여부는 연령대별 비교도 유의미하지만, 이주노동자,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데이터 비교도 유의미함. 지역/소득/연령/성별 통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세부목표를 측정할 수 있음.

3) 지표 제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4-4	직업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수요자들에게 양적, 질적으로 적합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 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직무역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 ○ ICT 산업·직종 종사자 수	○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수(전체,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주여성, 탈북여성, 장애여성 등 취약계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량을 가진 청소년, 성인 등(구직자 및 재직자 포함) 비중을 높인다.		층별)
4-6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 청소년/성인 문해율 ○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가능한 언어역량과 수리역량의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특정 연령 인구 비율 (전체,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 성별, 취약계층*별) ○ 청소년/성인 문해율(전체,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 성별, 취약계층*별) ○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전체,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 성별, 취약계층*별) <p>*이주여성, 탈북여성, 장애여성 등의 범주</p>

라. SDG 11번 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1) 관련 내용

SDG 11번 목표는 도시 지속가능성 목표로,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보장하는 것에 대한 것임. 도시 지속가능성에는 도시에서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의 안전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현재 SDG 11번 목표에 대한 세부목표와 지표는 총 5개에 대해서만 작업반 초안에 반영되었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도시 안전 세부목표와 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히 11.1(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과 11.2(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 세부목표에 따른 지표를 11.1.1 빈민가, 임시거

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로 하여 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분리통계를 하여 포용적인 도시 시스템 구축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음.

11.7 세부목표의 11.7.2 지표는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지난 12개월 동안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로 하여, 도시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디에서나 포용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실태파악도 필요함.

2) 지표 제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의 환경을 개선한다.	작업반 초안 미반영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불충분한 시설을 가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인구의 비율(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별)
11.2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상동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별)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상동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시가화 지역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전체, 성별, 연령별, 장애별)
		상동	11.7.2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지난 12개월 동안 성별, 연령별, 장애상태별, 발생 장소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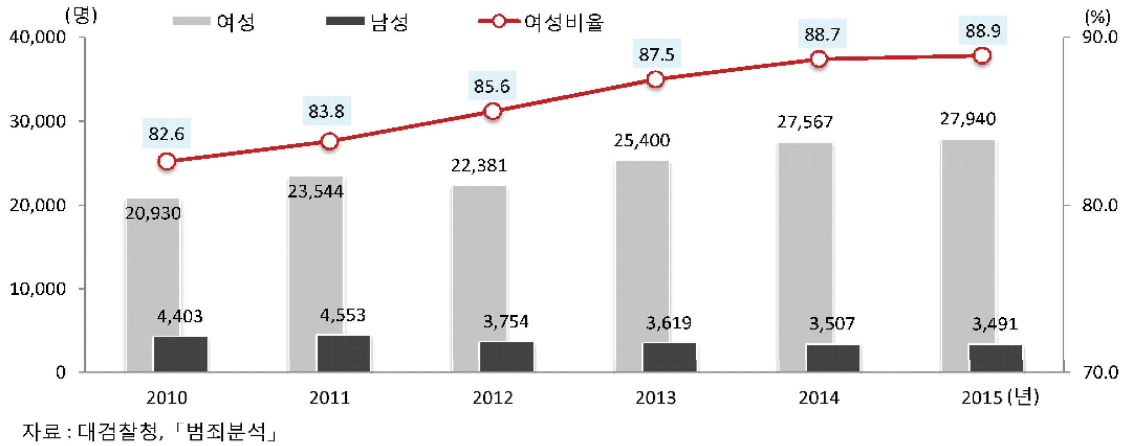
마. SDG 16번 목표 : 거버넌스 인권·평화

1) 관련 내용

세부 목표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16.2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의 지표에서 성별, 연령 등의 분리통계를 통해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폭력범죄, 인권침해 등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세부목표 16.1의 경우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여성의 체

감 안전율이 낮은 사회적 상황에서 성별분리통계는 반드시 필요함.

※ 참고 : 성별에 따른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비율 (2015)



*출처 : 통계청, 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46쪽.

2) 지표 제안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상당히 감소한다.	16.1.1 살인범죄 사건 발생 및 살해피해자 수 16.1.2 무기나 불법 총기에 의한 부상 또는 사망자 수 16.1.3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자 수 16.1.4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과 사망자 수 16.1.5 사이버 공간 관련된 폭력 사건 수와 문제 해결 (몰래카메라 등) 16.1.6 일상 생활 폭력 사건 수와 문제 해결 비율 (충간소음, 데이트 폭력 등) 16.1.7 기타 안전 및 재해에 의한 사망사건 발생 및 피해자 수 16.1.8 고문 사건 발생 수와 침해자 처벌 수 16.1.9 일상에서의 시민/주민의 안전체감도	16.1.1~16.1.9 지표에서 연령별, 성별 분리 통계 수집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	16.2.1 아동폭력 사례 수 (유형별-	16.2.1, 16.2.2, 16.2.3,

번호	세부목표	지표	제안 지표
	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한다.	신체, 언어 등) 16.2.2 학교 내 신체폭력 (체벌) 사례 16.2.3 아동의 성폭력 경험 및 보고 사례 16.2.4 아동보호 예산과 보호기관 종사자 수 16.2.5 아동 인신매매 보고 사례 수와 해결 사례 수 16.2.6 인구 100,000명당 구금된 아동의 수	16.2.5, 16.2.6 지표에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바. 여성 MGoS 그룹 입장문서 작성 참가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손경희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